사건위임계약서(민사)

위임인(갑):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수임인(을): 법무법인(유한) 지안, 대표이사 변호사 정진형

사건의 표시

사건번호		사 건 명	전직금지 가처분
당 사 자	(주)원익아이피에스	상 대 방	오수호
(신청인)		(피신청인)	

위 당사자들은 위 표시 사건의 제1심에 있어서의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 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 적】 갑은 을에게 위 표시 사건의 처리(이하 "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제2조 【위임한계】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한계는 당해 심급에 한하고, 파기 환송된 사건이나 상소의 제기,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 본안소송 등 부수적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보전처분 사건의 경우, 이의사건 또는 취소 사건은 별개의 위임사무로 하되,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3조【수권범위】 갑은 을에게 따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위임장 또는 선임서에 적은 자격과 권한을 수여한다.

제4조 【수임인의 의무】을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자료제공 등】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 또는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갑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착수보수]

① 갑은 을에게 본 계약에 따른 착수보수로 아래 을 명의의 계좌로 <u>금 칠백만원</u> (\\(\psi 7,000,000\)(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을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지급한다.

신한은행 140-010-405453, 예금주 : 법무법인(유한) 지안





② 갑은 제1항의 착수금에 대하여는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화해, 당사자의 사망, 해임, 위임계약의 해제 등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 【성과보수】

본 위임사무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은 성과보수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한다.

제8조 [비용부담]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사료, 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는 그 전액을 갑이 부담한다.

제9조 【손해배상책임】

- ① 을의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을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을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담당변호사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ia.

- 제10조 (계약해지) 잡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의 등 이 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
- 제11조 【통지의무】을은 위임사무의 중요한 처리상황 및 그 결과를 갑에게 통지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갑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수지급의 지체】

- ① 갑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을은 위임사무에 착수하지 않거나 그 위임사무의 처리를 중단하거나 사임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조 【자료의 보관책임】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위임 종료 시 갑에게 수령할 것을 통지한 후 3개월 내에 별다른 의사표 시가 없을 경우 을은 이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제14조【지급보장】

- ① 을은 이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갑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을은 갑이 제1항의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련하여 보관하게 된 금전, 문서 또는 자료 등을 유치하 거나 상계처리 할 수 있다.
- ③ 전항의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5조 [인장조각]** 이 위임계약의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을은 갑 또는 당사자의 인 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을은 사후에 인장조각 및 사용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6조 【비밀유지】 을은 업무상 취득한 갑의 모든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업무수행상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7조 【민법과의 관계】** 기타 위임사항에 관하여 이 위임계약서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 사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2017. 1.

"갑"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산단로 75 대표이사 하 윤 희

"을" 법무법인(유한) 지안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542, 5층(논현동, 영풍빌딩) 전화: 02-2007-6800 팩스: 02-2007-680 대표이사 변호사 정 진 형